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7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4. 12. 17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청장의 위임사무가 단순 오류 등의 사항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시장의 사전동의를 삭제함.
-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서 서식의 별지 번호를 자구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위임사무 처리 시 시장의 사전동의 단서를 삭제함(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3항).
-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서 서식의 별지 번호를 자구 수정함(안 제4조2항 및 별지 제1호서식).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을 “별지 서식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안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, 같은 서식(중전의 안 별지 제1호서식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재정비축진지구 의 경미한 변경) ①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재정비축진지구 의 경미한 변경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직 접 이를 처리할 수 있 다. 다만, 시장의 사 전동의를 받은 경우 에 한한다.</u> <u>1. 측량에 의한 지구 면적 변경</u> <u>2. 단순한 착오·오기 정정</u></p>	<p>제3조(재정비축진지구 의 경미한 변경) ①·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<단서 삭제></u> 1. ----- ----- 2. ----- ---</p>
<p>제4조(재정비축진계획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재정비축진계획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영 제13조의3제1 항에 따라 법 제15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의 자가 재정비축 진계획의 수립을 제 안하는 경우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</u></p>	<p>제4조(재정비축진계획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① (개정안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서식</u></p>

제5조(재정비촉진계획
의 경미한 변경) ①·
② (생략)
<신설>

서식에 따른다.

제5조(재정비촉진계획
의 경미한 변경) ①·
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직
접 이를 처리할 수 있
다. 다만, 시장의 사
전동의를 받은 경우
에 한한다.

1. 측량에 의한 지구
면적 변경
2. 단순한 착오·오기
정정

에 -----.

제5조(재정비촉진계획
의 경미한 변경) ①·
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-----

--. <단서 삭제>

1. -----

2. -----
